지식경제부 보도자료	전기절약,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http://www.mke.go.kr
'12년 11월 2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에너지절약협력과장 나성화 (2110-3935), 이장석 주무관(3938) 전력산업과장 박성택(2110-4897), 이재홍 사무관(4898)	

12월 3일부터 범국민 절전운동과 함께 "에너지사용 제한조치" 본격 실시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금년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힘

○ 예년보다 심한 추위로 겨울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내달부터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하고, 전기 다소비 건물의 난방 온도 20℃ 제한,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, 오후 피크 시간대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될 예정임

○ 또 예비 전력이 400만kW 밑으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의 난방기 운영을 제한할 방침임

○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하되 단속활동과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(최대 300만원) 부과는 내년 1월 7일부터 적용됨

○ 다만, 산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내년 1월 7일 시행과 동시에 단속에 들어감

□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을 보면,

①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: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6000개 사업체는 내년 1월~2월 전기사용량을 금년 12월 사용량 대비 3~10%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함

② 건물 난방온도 제한 : 계약전력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5000여개소와 2000석유환산톤(TOE)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은 20℃ 이하로 난방온도를 제한함

* 공공기관(1만9000곳)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18℃제한, 개인전열기 사용 금지

③ 개문(開門)난방 영업금지 :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함

④ 네온사인 사용제한 : 오후 피크시간대인 5시~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함

*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

⑤ 난방기 순차운휴 : 예비 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전 피크시간대인 10시~12시에 공공기관 1만9000여 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의 난방기를 순차 운영토록 제한함

□ 지경부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다음달 3일부터 단속이 시작되기 전인 1월 6일까지 한달여 동안 지자체, 시민단체 등과 함께 빌딩, 상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에 집중한다는 방침임

○ 시행 첫날인 12월 3일에는 '절전시민단체 협의회 발대식'을 갖고 명동 상가 일대를 대상으로 '전기절약 캠페인'을 개최할 예정임

○ 또 겨울철 생활 속 에너지절약 캠페인인 '아싸가자* 국민발전소'의 4대 실천요령인 ▲에너지 사랑나누기, ▲건강온도 20도 지키기, ▲내복 스타일, ▲전열기 뽑기 등을 통해 절전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임

* (아)껴서 나누자, (사/싸)랑한다 건강온도, (가)뿐하다 내복 스타일, (자)~뽑자 전열기

□ 지경부는 "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함"을 강조하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함

(붙임) 에너지사용 제한 요약

붙임 **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(요약)**

□ 시행기간 : ‘12.12.3~’13.2.22
– 계도기간 : ‘12.12.3~’13.1.6.(5주간) / 과태료 부과기간 : ‘13.1.7~’13.2.22.(7주간)

구 분		제한대상	제외대상	제한내용
1	**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**	•계약전력 3천kW 이상 (약6천개소)	공항, 대중교통 시설, 의료기관, 학교 등	‘12.12월 대비 ’13.1~2월 전기 사용량 3~10%의무 감축
2	**건물의 난방온도 제한**	•계약전력 1백~3천kW (약6.5만개소) •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(476개소) •공공기관(약 1.9만개소)	공동주택, 유치원, 의료기관, 종교시설, 전통시장 등	건물난방시 건강온도(20℃) 이하로 유지 * 공공기관은 18℃이하 * 제외구역: 도서관(열람실), 강의실(교실), 보존시설 등
3	**개문난방 영업 금지**	•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매장, 상점, 건물 등	난방기미설치업장, 지하도 등	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
4	**네온사인 사용제한**	•네온사인 사용 사업장	간판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허용	17~19시 사이 네온사인 제한
5	**난방기 순차운휴 실시**	•공공기관(약1.9만개소) •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(476개소)	-	전력수급비상시(예비전력 4백만kW이하) 오전10~12시 권역별 난방기 순차운휴

〈 권역별 난방기 순차 운휴 방법(— : 중지시간) 〉

구 분	10:00~10:30	10:30~11:00	11:00~11 :30	11:30~12:00
1그룹	—		—	
2그룹		—		—

* (1그룹) 경기,부산,울산,광주,경북,전남,충북,강원,제주 / (2그룹) 서울,대구,인천,대전,전북,충남,경남,세종